

##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정 2018. 11. 16 조례 제2987호  
일부개정 2020. 7. 10 조례 제3213호(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때,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소양을 통합 · 조정 · 반영해 나가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.

1. 주요 시정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
2.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
3. 위원회 연구 · 검토 사항에 대한 제안 또는 권고
4. 공약추진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정책 자문
5. 그 밖에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시민, 시민단체, 대학교수, 연구원,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각계각층에서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어느 한쪽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을 호선하며 그 중 1명을 수석부위원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위원장,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분과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요 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한다.

1. 시정혁신 분과위원회 : 시민참여, 일반행정, 예산, 정보통신 등

2. 행복도시 분과위원회 :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창출, 교육, 문화예술, 평생 학습, 안전, 체육, 청소년, 복지, 보건 등

3. 도시개혁 분과위원회 : 도시재생, 건축, 도로, 교통, 공원, 상·하수도, 녹지, 환경 등

② 안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이거나 안건의 성격 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사안의 처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6조(분과위원회 운영) 분야별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,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소집할 수 있으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의안제출) ① 안양시의 각 실·과·관·소장과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의안을 제출받은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지정하여 자문, 제안, 건의, 조사, 연구하게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쳐 심의·의결한다.

제9조(결과의 반영) 시장은 위원회 자문 등에 대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, 재정여건, 시행시기,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정반영 여부를 결정한다.

제10조(실무지원단 등) ①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총괄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11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의 위촉 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

2. 질병,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
4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
제13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수당 등)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7. 10>

② 위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한다.

부칙 <2020. 7. 10 조례 제3213호,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 
지급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5 까지 생략

④6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④7 부터 ④8 까지 생략

